



의안번호	제82호
------	------

<p>논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p>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17. 10. 17.

논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82호
----------	------

제출연월일 : 2017. 10. 17.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 감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위원의 임기와 자격,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자체감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장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2조)
- 나. 감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에 관한 사항, 시정 및 개선 요구 등에 관한 사항 등 결정.
 - 위원장은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처리.
- 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라.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음.
- 마.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바. 감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로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함.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

(2)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사회복지과)

(3) 규제심사 : 대상 아님(예산담당관)

(4)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가) 예고기간 : 2017. 8. 29 ~ 2017. 9. 18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 붙임

(6) 충청남도소관실과 : 충청남도감사위원회

□ 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제 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논산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
2.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
3. 회계관계 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요구
4. 시정·주의, 통보·개선 요구 및 권고 등
5. 재심의 처리 및 적극행정 면책 심사
6. 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
7. 감사의 생략
8. 그 밖에 시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회의 운영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명한다.

③ 시장은 비상임 위원 중 1명을 논산시 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6급 상당의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상임위원 또는 비상임위원으로 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 등) 위원장 및 위원 임용,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20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8조제3항, 제3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비상임위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39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의 겸직 등의 금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본인이 해당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용역·자문·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안건에 관여한 경우

3. 해당 안전의 관계인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인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전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5.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감사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제척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거나 기타 심의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관계인의 진술권) 위원회가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서면·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 회의 출석 및 안전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및 안전심의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안의 작성 등) ① 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의안을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의안에 관계있는 직원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4조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은 의안 심의 의결 전 제출된 안전에 대해 사전 심의하고 검토하여 보고서를 제출 설명해야 한다.

제14조(위원회 규정) 위원회는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감사위원회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전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감사위원회 규정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 등의 조항 중 "감사관" 또는 "감사기구의 장"은 해당 규칙 등이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거나 새로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보며, "감사기구"는 "감사위원회"로 본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감사담당관	박 찬 해
	감 사 팀 장	성 경 섭
	담 당 자	이 상 권 (746-5102)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제4조(구성), 제6조(위원의 자격 등), 제12조(수당)에 따른 위원장 및 상임위원 인건비 및 위원 회의 참석 수당

2. 비용 추계 결과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추계의 전제

- 감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보조

나. 추계 결과

- 세 출 : **752,980**천원/5년
 - 수 당 : 100,000원 × 3명 × 12월 × 5년 = 18,000,000원
 - 인건비 : 710,680,000원
 - ▶ 위 원 장 : 75,862,000원/연 × 1명 × 5년 = 379,310,000원
 - ▶ 상임위원 : 66,274,000원/연 × 1명 × 5년 = 331,370,000원
 - 직급보조비 : 24,300,000원
 - ▶ 위 원 장 : 250,000원 × 1명 × 12월 × 5년 = 15,000,000원
 - ▶ 상임위원 : 155,000원 × 1명 × 12월 × 5년 = 9,300,000원

다. 산출 근거

- 논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연봉 상한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3. 작성자

감사담당관 박 찬 해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세	출	150,596	150,596	150,596	150,596	150,596	752,980
운	영 비	3,600	3,600	3,600	3,600	3,600	18,000
인	건 비	146,996	146,996	146,996	146,996	146,996	734,980
재	원 조 달	150,596	150,596	150,596	150,596	150,596	752,980
의	존 재 원						
자 체 수 입	소 계	150,596	150,596	150,596	150,596	150,596	752,980
	지 방 세	150,596	150,596	150,596	150,596	150,596	752,980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
2.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3.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등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등의 규모, 관장 사무 또는 자체감사 대상 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로 두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은 관계 법령,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감사기구로 둘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은 자체감사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합의제감사기구의 운영)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합의제감사 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합의제감사기구 위원의 임용, 임기,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20조, 제28조 제2항, 제29조,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제5항의 감사기구의 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합의제감사기구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2항·제4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2항·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격 여부를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합의제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그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9조(감사기구의 장의 임기)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임기는 5년의 범위

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감사기구의 장에 대하여 제3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및 직무수행 실적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감사기구의 장의 신분보장)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자는 감사기구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감사기구의 장이 개방형 직위가 아닌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내에 그의 의사에 반하여 채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승진임용의 경우
3. 휴직의 경우
4.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9조제5항에 따른 교체권고의 대상이 된 경우
6.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제11조(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 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 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지 아니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은 기관의 규모, 관장 사무와 자체감사기구가 자체감사업무와 같이 수행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감사기구의 장의 임무 등)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37조에 따른 감사기준과 감사활동수칙을 준수하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회계와 사무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감사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부정·비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겸직 등의 금지)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職)을 겸하거나,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감사기구의 장의 직급)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직급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수, 소속 공무원의 규모, 예산 규모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체감사기구의 규모에 따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다.

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지면 그 직에서 교체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28조(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편성) ②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자체감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비밀유지 의무)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등) ③ 감사원은 감사 및 회계 분야에 대한 교육 등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한 교육을 한다.

제39조(자체감사활동의 심사) ⑤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감사기구의 장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 ①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이하 “합의제감사기구“라 한다)의 위원장은 합의제

감사기구를 대표하고, 합의제감사기구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 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합의제감사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의제감사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합의제감사기구의 의견을 들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합의제감사기구가 해당 기관의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합의제감사기구가 정한다.

제6조(자체감사를 전담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 관련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 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나.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3.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